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3-29

제출년월일: 2023. 3.

제 출 자: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전문가 확보를 통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보육 정책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 변경(안 제5조제1항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제6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3. 2. 9. ~ 2023. 3. 2.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워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5)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 의결(2023. 3. 1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중 "15명 이내"를 "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	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
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	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
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<u>성별을 고려하여 20</u> 명 이내의
	위원으로 구성한다.
<u>②·③·④</u> (생 략)	$\underline{2} \cdot \underline{3} \cdot \underline{4}$ (현행 제2항, 제3항
	및 제4항과 같음)
	부 칙
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5조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박신영
연 락 처	02-3153-8905